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
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진 영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광고물등 변경허가·신고시 표시기간 연장 허용 및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중 사업용 자동차의 광고내용에 따른 허가·신고 대상 조정 등 규제개선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민원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광고물등 변경허가·신고시 표시기간 연장 허용

- 1) 광고물등 표시기간 연장 신청기간 표시기간 만료일 30일 전후로 제한되어 있어 광고물 변경시기에 맞추어 표시기간 연장신청이 곤란하고, 경우에 따라 안전점검 수수료를 이중으로 부담을 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
- 2) 이에 따라 광고물등의 규격, 사용자재, 표시위치·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표시기간 연장신청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

나.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허가·신고 대상 조정

- 1)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중 사업용 차량의 경우 자사광고 또는 타사

광고 구분없이 모두 허가를 받고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

- 2) 허가·신고 절차 간소화 측면에서 사업용자동차 등에 소유자의 성명·명칭 등 자기 관련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으로 완화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11. 20. ~ 12. 30.) 예정
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9호가목, 나목 및 라목 중 “한다)”를 각각 “한다)에 제19조제5항제2호 외의 사항을 표시하는 경우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7호 중 “이용 광고물”을 “이용 광고물 및 사업용 자동차, 사업용 화물자동차, 음식판매자동차에 제19조제5항제2호에 규정된 사항을 표시하는 경우”로 한다.

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호, 제2호, 제4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신청시에 표시기간 연장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광고물의 새로운 표시기간은 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.

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, 항공기등(비행선은 제외한다) 및 덤프트럭”을 “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통수단 외의 교통수단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4조(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 시설)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(이하 “표시”라 한다)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	제4조(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 시설) ①	-----	

1. ~ 8. (생략)		1. ~ 8. (현행과 같음)		
9. 제3조제13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(이하 “교통수단 이용 광고물”이라 한다)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		9.	-----	

가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(이하 “사업용 자동차”라 한다)		가.	-----	

			- <u>한다</u>)에 제19조제5항제2	
			<u>호</u> 외의 사항을 표시하는	
			<u>경우</u>	
나.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사업용 화물자동차(이하 “사업용 화물자동차”라 한다)		나.	-----	

			----- <u>한다</u>)에 제19조	
			<u>제5항제2호</u> 외의 사항을	

	<u>표시하는 경우</u>
다. (생 략)	다. (현행과 같음)
라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·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(이하 “음식판매자동차”라 <u>한다</u>)	라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한</u> <u>다</u>)에 제19조제5항제2호 외의 사항을 표시하는 <u>경</u> <u>우</u>
10. ~ 13. (생 략)	10. ~ 13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5조(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 시설)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5조(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 시설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.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허가 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제외한 교통수단 <u>이용</u> <u>광고물</u>	7. ----- ----- ----- <u>이용</u> <u>광고물 및 사업용 자동차, 사</u>

1. ~ 3. (생략)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⑥ (생 략)

⑥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연 락 처	(044) 205 - 3541